

## **1. 제정이유**

전자무역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전자

무역의 추진과 관련된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법·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관세청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중소기업협동중앙회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 관련민간기관의 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자무역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 1급 공무원 또는 1급상당 공무원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되도록 함(안 제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 국가전자무역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무역촉진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전자무역 추진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각 부처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
3. 전자무역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통상교섭본부장·관세청장
2. 대한상공회의소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한국무역협회회장

3.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전자무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부처의 1급 공무원 또는 1급상당 공무원 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민간기관의 임직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그 밖에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이 된다.

제8조(민간자문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무역업계·학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